

貨換信用狀去來下の 銀行間 代金償還統一規則에 관한 考察

李千守*

-
- I. 序 論
 - II. 信用狀去來와 銀行間 代金償還
 - III. 銀行間 代金償還統一規則의 主要內容에 관한 檢討
 - IV. 結 論
-

I. 序 論

화환신용장거래에 따른 대금상환에는 상환은행이 개입하지 않는 단순 혹은 직접 대금상환과 상환은행이 개입하게 되는 은행간 대금상환이 있다. 국제상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후자이다.

단순 대금상환과 마찬가지로, 은행간 대금상환에는 국적을 달리하는 많은 유형의 은행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발행의뢰인이나 수익자까지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 단순 대금상환의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하여 거래당사자간의 책임문제를 원활히 해결하여 왔지만, 은행간 대금상환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1974년 국제상업회의소는 제3차 개정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에서 처음으로 은행간 대금상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를 다시 1983년 제4차 개정신용장통일규칙 제21조를 거쳐, 1993년 제5차 개정신용장통일규칙 제19조에서 과거의 규정을 좀더 세분화하여 보완한 바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국제은행업무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Councils in Inter

* 釜山大學校 貿易學科 講師.

national Banking : NACIB)에서는 1981년에 '신용장하의 은행간 대금상환관습 및 절차'(U.S. Practices and Procedures governing Bank-to-Bank Reimbursements Under Letters of Credit)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상기의 제규칙들에 의해서도 은행간 대금상환에 있어 복잡한 사무절차나 당사자간의 책임문제를 일괄적으로 규율할 수 없었고, 또한 국가 또는 지역마다 다르게 이를 운용하여 왔고 때로는 신용장통일규칙의 범위를 넘어 활용되어 온 측면도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요청되어, 마침내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개정작업을 완료한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에서는, 1993년에 작업부회를 설치하고 신용장거래에 있어 은행간 대금상환에 관한 새로운 통일규칙을 제정하는 작업을 개시하였다.

동 작업부회는 은행간 대금상환에 관한 전세계의 관행을 정확하게 반영시킬 것을 목표로 하여, 1995년 봄에 은행간 대금상환의 현 규칙을 문서화하고, 은행간 대금상환에 관한 모든 당사자에게 그들의 업무를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또 그들이 거래하고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시키기 위하여, 1981년 미국의 국제은행업무협회가 마련한 은행간 대금상환에 관한 관습 및 절차를 참조하여, 1995년 국제상업회의소는 '은행간 대금상환통일규칙'(ICC Uniform Rules for Bank to Bank Reimburse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 URR 525)을 초안하였다. 이에 국제상업회의소는 URR 525를 정식으로 채택하여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그동안 국내은행계의 여건미비로 동 통일규칙의 채택을 미루어 왔으나 1997년에 들어 비로소 채택하여 활용하고 있다.

새로 탄생된 은행간 대금상환통일규칙은 상환은행의 법적 성격, 발행은행의 의무와 책임, 상환청구은행의 구체적인 대금상환청구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량의 대금상환사무처리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간 대금상환에 관한 통일규칙을 운용하는 데에는 과거 거래당사자간에 형성된 관행으로 인하여 신용장발행 및 통지와 수익자의 신용장 사용 등과 관련하여 이에 파생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상환은행을 통한 은행간 대금상환은 신용장통일규칙과 새로 마련된 은행간 대금상환통일규칙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거래당사자간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본고에서는 신용장거래에서의 은행간 대금상환의 의의와 그 필요성을 간단

히 살펴보고, 동 통일규칙이 정하고 있는 주요내용을 연구 검토하여 동 규칙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II. 信用狀去來와 銀行間 代金償還

1. 銀行間 代金償還의 意義

수익자인 수출상이 제시한 신용장조건 일치서류에 대해서 지정은행(은행간 대금상환의 경우에는 상환청구은행이 됨)이 지급이행을 행한 경우에는, 동 은행의 지급이행에 대하여 수권자인 발행은행은 지정은행에게 대금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화환신용장거래에서는 몇 가지 대금상환유형이 발생한다.

대체로 확인은행이나 지정은행은 발행은행을 위하여 동 은행에 발행은행의 예금계정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대금상환은 발행은행의 계정을 借記(debit)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즉 지정은행 혹은 확인은행은 수익자에게 지급이행을 위하여 동 은행에 있는 발행은행의 계정을 단순히 借記하면 된다. 이러한 대금상환의 유형을 직접 대금상환(direct reimbursement) 또는 단순 대금상환(simple reimbursement)이라 한다.

한편 상환어음의 발행없이 수익자가 발행하는 어음의 지급은행을 해당신용장의 통화 소재지에 있는 제3의 은행에게 지정한, 이른바 매입신용장의 경우에는 수출지에 있는 매입은행에게 신용장 매입을 허용하고 그 매입은행이 어음배서인의 입장(화환어음의 선의의 소지인)에서 제3의 지급은행에 제시하여 지급이나 인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화환신용장거래에서 확인은행이나 지정은행이 발행은행의 대금을 차기할 예금계정을 동 은행에 마련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발행은행은 이를 위해 예금계정을 유지하고 있는 제3의 은행인 상환은행을 통하여 상환금과 수수료가 지급되도록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대금상환유형을 은행간 대금상환(bank-to-bank reimbursement)이라 한다. 이 경우 상환은행은 화환신용장거래에서의 주요당사자는 아니지만, 발행은행의 지급담당자로서 거래의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이 방식에 의할 경우 발행은행은 신용장상에서 상환청구은행에게 동 국가에

있는 발행은행의 예탁은행인 상환은행 앞으로 상환어음을 발행할 것을 수권한다. 만일 상환청구은행이 발행은행 앞으로 서류를 송부하면서 상환은행에게 신용장번호, 청구금액 등을 명시한 대금상환청구서(reimbursement claim) 또는 어음을 상환은행에 송부함으로써 청구하게 되면, 상환은행은 발행은행이 발행한 상환수권서상의 지시에 따라 그러한 대금상환청구에 응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환은행은 그 대금을 동 은행에 있는 발행은행의 예금계정에서 차기하게 된다. 이 방식은 상환어음을 발행하는 조건의 신용장, 즉 상환신용장에서 사용가능하다.

2. 銀行間 代金償還의 必要性

회환신용장과 관련한 대금상환방식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지만, 상환은행을 통한 은행간 대금상환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해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즉 ① 국제무역량의 증대에 따른 대량의 대금상환사무를 신속·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② 외환의 장소·시간적 과부족을 조정하기 위해, ③ 국제금리 또는 환율동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은행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④ 그리고 환율변동에 수반하는 환차손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환포지션의 조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부연하자면, 은행간 대금상환이 발행은행 소재국의 통화와 다른 통화기준의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 당해신용장에 근거해서 대금상환의 이행지를 발행은행 소재국으로 하기보다는 신용장의 표시통화를 법화로 하고 있는 국가, 즉 그 통화에 강제통용력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로 하는 편이 발행은행 및 상환청구은행 모두에 있어 유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자행의 외화예탁금계정을 환거래은행에 집중시켜 두는 편이 좋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발행은행이 외화기준 신용장을 발행하는 경우, 당해 통화국의 경제·금융의 중심지, 예를 들면 신용장이 미국 달러기준인 경우에는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등에 소재하는 환거래은행을, 신용장이 영국 파운드기준인 경우에는 런던에 소재하는 환거래은행을 상환은행으로 지정해서, 동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자행의 예금계정을 경유해서 대금상환을 행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하

며, 신용장상에 이 상환은행 앞으로 대금상환청구를 행하도록 하는 지시문언을 삽입하게 된다.¹⁾ 따라서 상환은행은 반드시 제3의 은행일 필요는 없고, 발행은행 자신의 본지점을 상환은행으로서 지정하는 경우도 물론 가능하다.²⁾ 이 경우 지정된 발행은행의 본지점은 통상의 상환은행과 동일한 권리 및 의무를 가지게 된다.

상환은행을 통한 은행간 대금상환방식은 발행은행과 상환은행 모두에게 이점을 부여하는데, 먼저 발행은행에 있어서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단순 내지 직접 대금상환의 경우에는, 실제 발행은행의 결제계정이 마련되어 있는 은행 또는 발행은행에 결제계정이 마련되어 있는 은행의 수가 한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대금상환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신용장의 수도 한정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반해 상환은행을 통하는 대금상환방법에는 어느 은행을 지정은행으로 하는 신용장의 대금상환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송금에 의한 방법에는 서류접수 후 매건 송금을 행한다고 하는 발행은행에 있어 사무부담이 있지만, 상환은행을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사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다른 한편, 상환은행에 있어서는 비교적 단순한 사무처리를 수탁함으로써 발행은행으로부터 결제자금의 예금을 수취할 수 있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상환수수료의 수입을 획득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Ⅲ. 銀行間 代金償還統一規則의 主要內容에 대한 檢討

은행간 대금상환통일규칙은 대체로 신용장거래에서 은행간 대금상환과 관련하여 상환은행의 법적 성격, 대금상환에 따르는 발행은행의 의무와 책임, 상환

1) 신용장상에 "You are authorized to reimburse yourselves on ABC Bank."라고 되어 있거나, 혹은 제3의 은행을 어음지급인으로서 정하면서 'Negotiating bank must send drafts to drawee bank and all documents to us'라는 지시표현이 있는 경우이다.

2) 환거래은행의 선정에 관하여 한국의 수입거래약정서 제2조 ②에서는 "본인이 환거래은행(통지은행, 매입은행, 지급은행, 인수은행, 확인은행, 상환은행 기타 관련은행을 말한다) 등을 지정하지 않거나 ...귀행이 환거래은행 등을 선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다. 또한 상환은행의 지정은 발행은행이 재량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은행관습으로 여겨지고 있다(ICC, *More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 ICC Publication S.A., 1991, Case No. 221).

청구은행의 구체적인 대금상환청구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많은 분량의 은행간 대금상환사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

동 통일규칙은 크게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모두 17개의 조항을 두고 있다. 즉 A장은 총칙과 정의(제1조~제3조), B장은 의무와 책임(제4조~제5조), C장은 수권, 조건변경 및 청구형식과 통지(제6조~제12조), D장은 잡칙(제13조~제17조)으로서 구성되어 있다.

1. 總則과 定義

(1) 統一規則의 適用

(가) 償還授權書 本文에 URR 525 準據文言의 挿入

먼저, URR 525가 은행간 대금상환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발행은행이 상환은행에 대해 발행하는 상환수권서상에 URR 525가 삽입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URR 525에서는 “URR 525이 상환수권서의 본문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 모든 은행간 대금상환에 적용된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다.³⁾

따라서 발행은행이 발행하는 상환수권서상에, 대금상환은 URR 525에 따라서 행해진다는 취지를 “Reimbursement Authorisation is subject to the Uniform Rules for Bank-to-Bank Reimburse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ICC Publication No. 525.”와 같이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 은행간 대금상환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where they are incorporated into the text of the Reimbursement Authorisation.”라는 표현에서 문제시될 수 있는 점은, 이 표현상에서는 어떠한 방법에 의해 URR의 준거문언을 삽입하여야 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생각컨대, 이와 같이 준거문언의 삽입방법에 대한 구체적 명시를 회피하고 있는 것은, 스위프트(SWIFT)를 이용하여 상환수권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URR에 준거하지 않는 상환수권서에 대해서는 그러한 취지의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발송하여야 하는 것이 매뉴얼에 정해져 있지만, URR에 준거하는

3) URR, 1995, Article 1. “The Uniform Rules for Bank-to-Bank Reimburse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Rules’), ICC Publication No. 525, shall apply to all Bank-to-Bank Reimbursements where they are incorporated into the text of the Reimbursement Authorisation.”

상환수권서에 대해서는 URR에 준거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고려한 것일 것이다.

SWIFT 방식에서는 화환신용장에 근거하는 대금상환에 관한 메시지 포맷으로서, 예를 들면 상환수권서의 발행과 관련하여서는 MT 740(Authorisation to Reimburse), 화환신용장의 발행과 관련하여서는 MT 700/701(Issue of a Documentary Credit), 대금상환청구의 제시와 관련하여서는 MT 742(Reimbursement Claim), 상환수권서의 조건변경과 관련하여서는 MT 747(Amendment to an Authorisation to Reimburse) 등을 마련하고 있다.⁴⁾ 앞의 MT 740과 MT 700/701에 대해서는 가맹 은행간에서는 개별적으로 URR 525에 준거한다는 취지의 명시가 없어도, URR 525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한, 당연히 URR 525가 적용될 것을 특약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약간의 수정을 덧붙여 1996년 11월 23일부터 실시하고 있다.⁵⁾

(나) URR 525의 準據文言이 없는 償還授權書

앞에서 언급한 규정에서 'where'이란 표현은, UCP 500에서 새로이 도입된 용어로서, URR 525에서도 도입하고 있다. 즉 국제상업회의소 은행기술실무위원회 작업부회에서는, UCP 500과 마찬가지로 URR 525의 준거문언이 없는 상환수권서에 관한 재판이나 중재에서, 재판관이나 중재인이 URR 525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as long as'이나 'provided that'과 같은 용어를 피하고, 'where'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 같다.

부연하자면, URR 525의 준거문언이 없는 상환수권서에서, 'as long as'(…하는 한)이나 'provided that'(…을 조건으로)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URR 525의 적용이 적극적으로 배제될 수 있지만, 'where'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URR 525의 적용이 적극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재판관이나 중재인의 선택에 따라 동 규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URR 525는 국제적으로 널리 보급되고 있는 단계이지만, 국제상업회의소라는 민간단체가 만든 임의규칙이고, 신용장통일규칙이나 인코텀즈 등과 마찬가지로, 그 적용은 기본적으로는 관계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 또 URR 525

4) S.W.I.F.T.s.c., User HANDBOOK STANDARD 3 - TRADE FINANCE, Part II - Documentary Credit & Guarantees (Release 94/2).

5) S.W.I.F.T.s.c., Advance Information Standards Release 1996 (Version 1, 1-29 January 1996).

의 준거문언이 없는 상환수권서는, 명확한 의사에 의해서 URR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 은행이 발행한 것일 수 있고, 또한 개개의 상환수권서에 대해서 URR의 준거문언을 기재할지 여부를 선택하고 있는 은행이 발행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URR의 준거문언이 없는 상환수권서에 대해서 재판관이나 중재인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임의로 URR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다.

(다) 信用狀上에 URR 準據文言의 挿入

신용장거래와 관련하여, 준거법으로 UCP 500이 적용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URR 525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UCP 500에 준거되는 신용장에 URR 525가 보완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환수권서상에 URR 525의 준거문언을 삽입할 것과, 신용장상에도 URR 525의 준거문언을 삽입할 것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URR 525의 제 1 조에서는, “발행은행은 대금상환청구가 URR 525에 준거한다는 취지를 화환신용장상에 명시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다.⁶⁾

경우에 따라서는 URR 525가 상환수권서상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신용장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URR 525가 상환수권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상환은행은 이에 구속되지만, 신용장이 URR 525를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금상환이 URR 525에 준거한다는 사실을 상환청구은행이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발행은행은 자신이 발행하는 신용장상 대금상환에 관한 지시문언에도 “Reimbursements under this credits are subject to the Uniform Rules for Bank-to-Bank Reimburse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ICC Publication No. 525.”라는 문언을 명시하여야 한다.⁷⁾ 그러나 개개의 거래에 대해서 URR 525가 적용될지 여부는 준거문언의 유무에 의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UCP 500 제 19 조는 대금상환을 행하는 자를 ‘다른 자(상환은행)’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국제상업회의소 은행기술실무위원회 작업부회에 의하면, 이러한 표현은 세계은행(World Bank), 미국내 개발은행

6) URR, 1995, Article 1. “The Issuing Bank is responsible for indicating in the Documentary Credit(‘Credits’) that Reimbursement Claims are subject to these Rules.”

7) 국제상업회의소 작업부회의 권고사항.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등과 같은 비은행기관에 대한 대금상환 청구의 경우에도 적합시키기 위해서 행해졌다. 그러나 URR 525는 이와 같은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거래의 대부분은 상업은행간의 표준적 은행간 대금상환과는 명확히 다르기 때문이다.⁸⁾

(2) 統一規則의 拘束力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각종의 국제상거래규칙과 마찬가지로, 은행간 대금상환통일규칙은 국제상거래를 행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사적계약을 거래상의 규칙(rule)으로 받아들인 것으로서, 법률과 같이 그 적용을 원하는 자나 원하지 않는 자를 막론하고, 그 규칙에 따르게 하는 보편적인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⁹⁾ 따라서 URR 525의 제 1 조에서도 “상환수권서상에 명확히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은행간 대금상환의 모든 관계당사자를 구속한다.”는 취지를 규정하면서,¹⁰⁾ 그 법적구속력을 갖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상환수권서에 준거문언을 삽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URR 525에 명시되어 있는 해석이나 취급기준은 모두 이에 의해 일률적으로 구속된다. 또한 은행간 대금상환에 관계하는 당사자 모두를 구속하고, 이와는 다른 해석이나 취급을 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URR 525에서 모든 은행간 대금상환을 망라해서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별도의 명확한 합의에 근거해서 URR 525의 원칙과는 다른 해석이나 취급을 할 수도 있다.

구속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URR이 관계당사자를 구속한다고 하는 것은 관계당사자는 URR의 제규정에 따라서 행동하여야 하고 URR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URR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한다.

이와 같은 URR의 구속력에는 ‘상환수권서상에 명확히 다른 정함이 없는 한’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다. 따라서 상환수권서가 URR의 제규정을 모두 배

8) ICC, *Uniform Rules for Bank-to-Bank Reimburse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A Commentary* (이하 ‘Commentary’라 약칭한다), 1.

9) 姜元辰, 貨換信用狀去來에서 銀行의 免責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中央大學校 大學院, 1990, 19面 참조.

10) URR, 1995, Article 1. “They are binding on all parties thereto, unless otherwise expressly stipulated in the Reimbursement Authorisation.”

제하도록 하는 조건 내지 특약을 정하고 있다면 신용장의 구속력은 당연히 없게 되지만,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URR에 준거하는 상환수권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발행의뢰인 또는 발행은행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과 유사한 조건의 상환수권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상환수권서상에 명확히 다른 정함이 없는 한’이라는 전제는, 상기와 같은 극단적인 사례를 초래할 요소를 가지고는 있지만, 본래는 전향적인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은행간 대금상환은 관계당사자, 상관습 및 관행 등에 따라 그 내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URR상의 특정규정을 수정 내지 배제할 것을 인정하여, 은행간 대금상환이 원활하게 행해지도록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URR에는 ‘상환수권서상에 명확히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혹은 이와 유사한 조건이 붙은 규정이 몇군데 마련¹¹⁾되어 있지만, 그와 같은 조건이 붙어 있지 않는 규정에 대해서도,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전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환수권서가 명확히 다른 정함을 명시하고 있다면, 그 규정은 적용되지 않거나 수정되어 적용될 것이다.

(3) 信用狀統一規則과의 關係

URR 525는 UCP 500 제 19 조의 은행간 상환약정을 보완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 신용장이 UCP 500에 준거하여 발행되어 있는 경우 은행간 대금상환이라는 특별한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한다. 왜냐하면 당초 1993년 신용장통일규칙 제 5차 개정시에 제 19 조 은행간 상환약정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려 하였으나,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 너무 많아 이에 관해 별도의 통일규칙을 제정한 것이 본 규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UCP 500와 URR 525가 상호 유사하게 공유하고 있는 조항은 일부분에 그치고 있다. 특히 UCP 500만으로써 화환신용장하에서 은행간 대금상환을 규율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신용장거래 당사자들이 은행간 대금상환방식을 통해 대금상환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URR 525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11) URR, 1995, Article 1, 11-d, 16-d.

또한 URR 525를 활용하는 경우 있어서, 만일 UCP 500와 URR 525가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는 어느 조항을 우선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지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URR 525의 제 1 조에서는, UCP 500가 URR 525에 우선한다는 것이 명시¹²⁾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4) 用語의 定義

ICC 은행위원회는 URR 525를 용이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동 규칙 제 2 조의 도입부분에서 정의된 용어의 단수형 및 복수형의 의미에 관한 절을 부가하였다. 따라서 개개거래에 응하여 그 용어를 해석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Reimbursement Claim'이라는 용어는, 만일 복수의 청구가 제시된 때에는 'Reimbursement Claims'라고 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정의된 용어가 사용될 때마다 '(s)'를 부기하는 문제를 회피하고, 규칙을 용이하게 해석하게 한다.

URR 525의 제 2 조는 은행간 대금상환에 사용되는 표준적인 전문용어를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본 조항에서 정의되고 있는 용어는 은행간 대금상환에서만 이용되는 독특한 것이다. URR 525에서 이용되고 있는 'advising bank', 'another bank' 등과 같은 UCP 용어는 UCP 500에 있어 정의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¹³⁾

(5) 償還授權書의 特性

발행은행은 상환은행을 지정하여 상환은행에게 대금상환을 위탁함에 있어 상환수권서¹⁴⁾를 교부하지만, 이 상환수권서는 발행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을 기초로 함에도 불구하고, 신용장으로부터는 단절된 독립추상성, 즉 무인성을 가진다. 그 이유로서는 상환수권서가 단지 발행은행과 상환은행간의 관계를 규율

12) URR, 1995, Article 1. 동 조항의 마지막 절은, URR 525가 UCP 500상의 관련규정에 우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혼란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13) Commentary, 2.

14) URR, 1995, Article 2-c. 발행은행에 의해서 신용장으로부터 독립하여 발행된 상환은행에 대한 지시 또는 수권이고, 상환청구은행에 상환할 것, 또는 발행은행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상환은행을 지급인으로서 발행된 기한부어음을 인수, 또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지시 또는 수권을 의미한다.

하는 것이고, 또 상환은행은 신용장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상환은행은 신용장으로부터 독립된 입장에서 행동한다. 상환은행은 신용장조건을 모르고 있고, 또 신용장조건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설령 상환은행이 신용장조건을 알고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상환은행의 대금상환방식을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고, 신용장상 어떤 조건에 책임을 지게하는 것이어도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환은행은 신용장조건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조건에 의해 구속을 받지도 않고, 상환확약을 발행하고 있지 않는 한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대금상환청구에 응할 것을 거절할 수 있다.¹⁵⁾

참고로, 신용장도 신용장수익자와 발행의뢰인간의 계약 및 발행은행과 발행의뢰인간의 계약을 원인관계로 하여 생겨나는 것이지만, 이러한 원인관계로부터도 독립된 무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¹⁶⁾

2. 義務와 責任.

(1) 代金償還請求의 受諾

상환은행은 신용장거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 은행은 발행은행을 위해서 지급편의를 제공함에 있어 발행은행 이외의 신용장 모든 관계당사자로부터 독립하여 행동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상환은행의 기능이 신용장거래 당사자인 발행은행으로부터 연유된 의무사항을 이행하는데 있다고 할지라도 상환은행은 신용장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비록 신용장조건에서 상환은행의 대금상환에 관한 발행은행의 지시가 명시되어 있어도 상환은행은 이와 무관하며 구속되지도 않는다. 상환은행이 대금상환에 관한 계약상의 관계는 발행은행에 의해 상환수권서상에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성립되지 않는다.¹⁷⁾

15) Commentary, 3.

16) UCP 1993, Article 3.

17) Howard N. Bennett, "Bank-to-bank reimburse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the Uniform Rules", *L.M.C.L.Q.*, 1998. 2, p. 111; 한주섭, "신용장거래에서의 은행간 상환에 관한 연구", 「중재」, 제 289 호, 대한상사중재원, 1998, 33면.

따라서 상환은행은 발행은행과의 관계에서 발행은행에 의한 상환수권서(상환조건변경을 포함)를 전면적으로 거절하고, 또는 상환은행 자신의 상환확약을 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을 승낙하여 일부에 대해서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도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즉 상환은행은 발행은행의 지시에 근거해서 행동하는데 지나지 않기 때문에 상환은행은 자신이 발행한 상환확약조건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상환청구은행의 대금상환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¹⁸⁾ 또한 상환은행이 상환청구은행의 대금상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환은행은 대금상환을 행하지 않는 이유를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¹⁹⁾

(2) 發行銀行의 責任

발행은행은 수익자에 대한 지급시기에 영향을 주는 대금상환청구에 응하기 위한 조건을 필요이상으로 상환은행에게 부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조건이 상환은행에게 부과되는 경우, 상환은행 이외의 신용장거래 당사자는 대금상환청구의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이유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발행은행은 신용장상에도 그러한 조건을 기재하여 신용장의 다른 모든 관계당사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발행의뢰인과 수익자에 의해 합의된 지급조건을 변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류의 조건으로서는 상환은행이 발행은행의 계정을 차기하여 대금상환청구에 응하기 전에, 발행은행에게 통지할 것을 상환은행에 요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대체로 상환청구은행과 수익자는 이러한 조건에 대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발행은행은 이러한 대금상환조건을 상환수권서 및 신용장상 기재하여야 한다.²⁰⁾ 만일 발행은행이 상환수권서 및 신용장상에 그러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발행은행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²¹⁾

18) URR, 1995, Article 4.

19) Commentary, 4.

20) Commentary, 5.

21) URR, 1995, Article 5.

3. 償還授權, 條件變更 및 請求의 形式과 通知

(1) 償還授權書 또는 償還條件變更의 發行 및 接受

먼저 발행은행이 화환신용장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금상환이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 질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일 은행간 대금상환방식이 결정된다면, 모든 은행간 대금상환은 상환은행에 대한 발행은행의 상환수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러한 상환수권은 발행은행에 의한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상환수권과 관련하여,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발행은행은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이 받을 권리가 있는 상환을 이들 은행(상환청구은행)에게 행함에 있어 다른 당사자(상환은행) 앞으로 청구함으로써 대금상환하고자 한 경우에는, 발행은행은 적절한 시기에 그 상환은행에게 그러한 상환청구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시 또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²⁾ 또한 은행간 대금상환통일규칙에서도, 발행은행이 상환은행을 통해 대금상환을 하고자 결정한 경우에는, 동 은행은 신용장상에 대금상환방법에 대해 지정은행에게 이를 지시하는 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³⁾

따라서 신용장상에서 이러한 대금상환에 관해서 발행은행이 적절한 지시를 행한 경우에는, 동 은행은 상환은행에 대해 상환수권서를 발행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상환수권서는 텔렉스(telex), SWIFT 등의 전송 또는 우편에 의해 발행될 수 있는데, 오늘날에는 전송에 의한 저비용 및 자동화된 메세지 처리방식 덕분에 우편에 의해서 상환수권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만일 SWIFT에 의해 상환수권서가 발행된다면, 그 상환수권서는 MT740 메세지로서 발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메세지는 상환수권서에 포함되는 모든 필요사항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²⁴⁾

URR 525의 제 6 조는 정확한 상환수권서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가) 償還授權書의 認證

22) UCP, 1993, Article 19-a.

23) URR, 1995, Article 5.

24) ICC, *ICC Guide to Bank-to-Bank Reimburse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A practical guide to daily operations*, ICC Publication S.A., 1997, p. 27.

상환수권서는 인증된 전송 또는 서명된 서신이어야 한다.²⁵⁾ 즉 상환은행은 상환수권서가 인증될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상환은행에 대해서 교부되는 상환수권서, 상환조건변경 및 상환청구에 대해서는, 상환은행은 그것이 발신인으로 된 자의 것임을 나타내는 인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금액에 따라서는 서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서명의 조회방법을 적용하지 말고, SWIFT를 주체로 하는 전송에 의해 발신인의 동일성을 확실하게 해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위조신용장에 의한 위조의 상환수권서 및 위조의 대금상환청구 등 교묘한 국제사기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상환은행으로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나) 償還授權書の 完全・正確性

상환수권서는 완전 또 정확하여야 하고, 은행간 대금상환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안된다.²⁶⁾ 이를 위해 신용장 혹은 그 일부분의 사본, 또는 신용장조건변경의 사본을 상환은행에 송부하지 않아야 한다. 부연하자면, 상환은행으로서는 신용장상의 어떤 조건과도 관계가 없고, 또한 그에 의해서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것을 상환은행에게 송부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만일 그러한 사본이 상환은행에 송부된 경우에는, 상환은행은 이를 무시할 수 있다.²⁷⁾

그리고 상환은행과의 관계에서 특히 약정이 행해져 있지 않는 한, 서명된 하나의 전송 또는 서신에 의해서 복수의 상환수권서를 송부해서는 안된다.²⁸⁾ 복수의 상환수권서 수리에 대해서 발행은행은 상환은행과 특별한 약정을 행하고 있지만, 상환은행의 동의없이 발행은행은 복수의 상환수권서를 송부하여서는 안된다.

(다) 信用狀條件 一致證明書

과거 상환신용장의 경우에는 지급·매입은행이 발행하는 상환어음에 동 은행이 수익자 또는 선의의 소지인에 대해서 신용장조건에 일치한 화환에 대해서 지급이행을 행한 취지의 증명서를 발행은행이 상환어음에 첨부할 것을 지

25) URR, 1995, Article 6-a.

26) URR, 1995, Article 6-b.

27) URR, 1995, Article 6-b-i.

28) URR, 1995, Article 6-b-ii.

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고, 현재에도 이를 요구하는 신용장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²⁹⁾

발행은행의 입장에서는 지급은행 또는 매입은행에 대해서는 송부되어 온 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고 있는 경우에만 대금상환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은 말할 것까지도 없다. 그러나 상환은행에게는 상환청구은행으로부터 서류가 송부되지 않기 때문에, 당해거래가 신용장조건을 준수하여 행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발행은행은 청구은행이 상환은행 앞으로 상환청구를 행할 때 신용장조건 일치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신용장조건에 하나로서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³⁰⁾

그러나 발행은행은 상환수권서상에서 신용장조건 일치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³¹⁾ 왜냐하면 이러한 일치증명서는 화환신용장거래에서 지정은행과 발행은행간의 문제이고 은행간 대금상환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화환신용장거래 당사자가 아닌 상환은행으로서는 상환청구은행의 적절한 대금상환청구에 대해서만 지급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동 은행은 신용장조건 일치증명서를 수취하여서는 안된다.

굳이 발행은행이 이러한 일치증명서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환청구은행이 발행은행 앞으로 직접 일치증명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상환은행에게는 송부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를 신용장상에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³²⁾

(라) 償還授權書の 必要記載事項

상환수권서상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³³⁾ 가운데, 특히 모든 상환수권서는 상환청구은행의 명칭을 명시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자유매입신용장의 경우에는 어떤 은행도 상환청구은행이 될 수 있다. 만일 상환청구은행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상환은행은 대금상환청구를 제시하고자 하는 어떤 은행에 대해서도 소지하고 있는 상환수권서

29) ICC,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Problems, queries, answers*, ICC Publishing S.A., 1989, Case 63; ICC, *Documentary credits UCP 500 & 400 Compared*, ICC Publishing S.A., 1993, p. 55; *European Asian Bank A.G. v. Punjab and Sind Bank*, (1981) 2 Lloyd's Rep. 651.

30) 朝岡良平, 實務家のための信用狀統一規則, 金融財政事情研究會, 1985, 216面.

31) URR, 1995, Article 6-c.

32) Commentary, 6-c.

33) URR, 1995, Article 6-d- i, ii, iii, iv, v.

에 근거해서 지급을 행할 것을 발행은행으로부터 수권받고 있다고 해석된다. 즉 상환청구은행은 타은행을 위해 행동하는 은행일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환은행은 타은행을 위해서 행동하는 은행으로부터의 대금상환청구에 응할 것도 수권되고 있다. 그러나 상환은행은 타은행을 위해서 청구하는 은행의 권한에 관한 정보를 가질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 경우 청구를 제시한 은행은 동 은행의 권한에 관한 정보를 상환은행에 제공하여야 한다.³⁴⁾

(마) 期限附 어음의 引受

상환은행이 발행은행을 위해 기한부어음의 인수를 요구받는 경우에는, 상환수권서에 추가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³⁵⁾ 어음을 인수함으로써 상환은행은 상환청구은행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거래에서 별개의 입장에서 행동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발행은행은 상환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지급어음을 발행하여서는 안된다.³⁶⁾ 왜냐하면 일람지급어음의 발행은 대금상환 절차의 지연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 事前通知

발행은행은, 때때로 상환청구은행이 상환은행에 대금상환청구를 행하기 전에 동 은행(발행은행)에 통지할 것을 상환청구은행에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통지를 사전통지(pre-notification)라고 하는데, 발행은행이 대금상환청구의 사전통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신용장상에 명시하여야 한다.³⁷⁾

(사) 借記事前通知

대금상환청구 지급을 위해서 발행은행의 계정을 차기할 시기를 발행은행에 통지할 것을, 발행은행이 상환청구은행 또는 상환은행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통지를 차기사전통지(pre-debit notification)라고 하는데, 발행은행은 종종 이러한 지시를 상환은행에게만 부여하기 때문에, 상환청구은행과 수익자가 이러한 사항을 모르는 사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³⁸⁾

상환은행으로서는 발행은행의 지시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

34) Commentary, 6-d.

35) URR, 1995, Article 6-e- i, ii, iii.

36) URR, 1995, Article 6-e.

37) URR, 1995, Article 6-f- i.

38) 이러한 사항은 상환수권서상에 있든지, 발행은행과 상환은행간의 일반거래약정에서 정하여 지고 있다.

은행은 이러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상환은행은 종종 이러한 요구를 위해서 지급을 지연시키고 있다. 따라서 신용장의 모든 관계당사자를 위해서 이러한 요구에 대한 정보를 신용장상에도 기재할 필요가 있다.³⁹⁾

이 문제에 대한 ICC 은행위원회 작업부회의 결론은, 이러한 정보를 신용장상에 기재하는 것이 차기사전통지를 취급하기 위한 타당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은행에 있어 자금관리상의 문제이고, 신용장 또는 은행간 대금상환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요구를 상환수권서에 부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발행은행은 일람지급신용장을 연지급신용장으로 변경해 버리게 되어 수익자나 상환청구은행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차기사전통지가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대금상환청구가 지급되기 위한 조건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차기사전통지의 정보를 신용장상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다.⁴⁰⁾

(아) 償還授權書 및 償還條件變更에 대한 拒絕通知

상환은행은 발행은행과의 관계, 발행은행의 지시에 근거해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행은행에 의한 상환수권서(상환조건변경을 포함)를 전면적으로 거절하거나, 또는 상환은행 자신의 상환확약을 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을 승낙하여 일부에 대해서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도,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금상환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상환은행이 대금상환청구를 거절하는 경우로서는 발행은행의 예금잔고부족, 대금상환이행이 상환은행 소재지의 법령상 위법에 해당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은행은 지체없이 거절의 취지를 발행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⁴¹⁾

(2) 償還授權書의 有效期間

상환수권서의 유효기간과 관련하여, 상환확약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환수권서에는 청구제시를 위한 유효기간 또는 최종일을 부가해서는 안된다. 또한 상환은행은 유효기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이와 같은 기간이 상환수권서에 명시되어 있어도 무시할 수 있다.⁴²⁾

39) URR, 1995, Article 6-f-ii.

40) Commentary, 6-f-ii.

41) URR, 1995, Article 6-g.

42) URR, 1995, Article 7.

이와 관련하여, ICC 은행위원회 작업부회는 상당히 장시간 유효기간의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한 결과, 상환수권서상에 유효기간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은행간 대금상환에 관여하는 당사자에 있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상환거래(상환확약 이외의 경우)에 있어 유효기간이 요구된다면, 많은 양의 대금상환청구가 상환수권서의 유효기간 때문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상환수권서에 유효기간을 부가하고 있는 발행은행은 대체로 신용장의 유효기간과 동일하다고 오해하여 이러한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실정이다.⁴³⁾

또한 신용장의 매입이 유효기간에, 또는 그것에 가까운 시점에서 행해진 경우에는, 대금상환청구는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은행에 도래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신용장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발행은행이 상환수권서를 취소할 취지를 상환은행에 통지하는 것은 간단한 절차이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요구된 경우에는 이것은 상환확약이 행해져 있지 않는 한, 상환은행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거래에 상환은행의 의무를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상환은행으로서는 대금상환을 행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요구하는 규정은 상환은행의 책임과 모순하게 된다.⁴⁴⁾

(3) 償還授權書の 條件變更 및 取消

먼저 상환수권서의 조건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상환청구은행으로부터의 청구제시에 영향을 주는 신용장 조건변경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발행은행은 이미 발행한 상환수권서의 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상환수권서에 영향을 주는 신용장상의 조건들은, ① 신용장통화나 금액, 그리고 추가적인 금액이나 허용범위에 대한 변경, ② 상환청구은행의 명칭에 대한 변경, ③ 어음제시기간이나 발행인에 대한 변경, ④ 상환은행의 동의가 있는 경우, 수권의 유효기간에 있어 변경, ⑤ 인수수수료나 할인수수료를 포함한 비용에 대해 책임있는 당사자에 대한 변경 등을 들 수 있다.⁴⁵⁾

상환조건변경서는 상환수권서의 지급에 관하여 상환은행에 대한 지시에 있

43) Commentary, 7.

44) *ibid.*

45) ICC, *ICC Guide to Bank-to-Bank Reimburse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A practical guide to daily operations*, ICC Publication S.A., 1997, p. 31.

어 어떤 변경을 나타내어야 한다. 만일 SWIFT를 이용할 경우 MT 747 메시지 방식이 사용되어야 한다.⁴⁶⁾

다음으로 상환수권서의 취소와 관련하여서는, 발행은행이 상환수권서를 취소하게 되는 이유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즉 발행은행이 상환수권서를 취소하기 원하는 경우나, 신용장이 사용되지 않은 채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신용장의 일부분만이 사용되고 나머지 부분이 사용되지 않은 채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만일 발행은행이 SWIFT를 이용하여, 상환수권서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MT 747, Amendment to an Authorization to Reimburse에서 수취인에 대한 발송인 정보를 나타내는 Field 72 란에 'CANC'이란 표현이 사용되어야 한다.

발행은행이 발행하는 상환수권서는 상환은행이 지급에 대한 동 은행의 별개 협약(상환협약)을 발행한 때를 제외하고는, 취소불능의 약속으로 간주되지 않는다.⁴⁷⁾ 따라서 발행은행은 상환수권서를 상환은행에 발행한 후에도, 그러한 취지를 상환은행에 통지함으로써 상환은행과의 관계에서는 임의로 상환수권서를 취소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⁴⁸⁾ 즉 상환수권서는 취소불능의 성격⁴⁹⁾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취소가능임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는 발행은행과 상환은행간의 법률관계를 위임관계로 볼 때 당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상환은행이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수령하기 전에 최초의 상환수권서의 내용에 따라 대금상환을 이행하거나 또는 기한부 환어음을 인수한 경우에는, 상환수권의 취소 및 조건변경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⁵⁰⁾ 즉 이 경우에도 발행은행은 상환은행에게 대금상환을 할 의무가 부여된다.⁵¹⁾

46) *ibid.*, p. 32.

47) *Commentary*, 8.

48) URR, 1995, Article 8-a; Howard N. Bennett, *op. cit.*, p. 117; ICC, *More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ICC Publishing S.A., 1991, Case No. 222 참조; 이에 관해서 UCP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다만 상환수권의 취소와 관련하여, 상환수권은 발행은행과 상환은행간의 문제에 한정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만을 내리고 있다.

49) URR, 1995, Article 9-b · g. 상환수권서가 상환은행과의 관계에서 취소불능인 경우에는 발행은행이 상환은행에 대해 상환협약을 행하도록 수권하는 내용의 상환수권을 교부하고 이에 대해 상환은행이 지체없이 거절의 취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그 경우에는 상환수권서는 취소불능상환수권서(irrevocable reimbursement authorisation)가 되고, 이의 취소·내용변경을 위해서는 상환은행의 동의가 필요하게 된다.

50) 이는 취소가능신용장에 관한 UCP 500의 제 8 조와 동일한 취지이다.

한편, 상환수권서의 취소·조건변경에 대해서 대금상환지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발행은행은 소정의 경로에 의해 그러한 취지를 상환청구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⁵²⁾ 발행은행은 신용장상의 은행간 지시(Bank-to-Bank Instructions)⁵³⁾에 상환은행명 외 필요사항을 기재하지만, 이 자체는 취소불능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어도 신용장조건은 아니다. 이는 발행은행과 상환청구은행간에 있어 은행간 지시이다. 즉 신용장의 취소불능확약은 발행은행과 수익자간의 문제이고, 상환에 대해서 상환청구은행에 대한 발행은행의 지시는 발행은행과 상환청구은행간의 문제이지 발행은행과 수익자간의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용장에 근거해서 상환청구은행이 행하는 지급에 대한 대금상환을 어떻게 해서 수취할 것인지에 대한 지시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는 이러한 지시는 발행은행의 확약의 취소불능적인 성질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고, 또한 상환은행이 상환청구에 지급한다는 상환은행에 의한 확약을 만들어 내는 것도 아니다.⁵⁴⁾

따라서 만일 이러한 은행간 지시의 취소·조건변경을 용인할 수 없는 상환청구은행은, 확인을 부가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수익자와의 관계에서는 매입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을 거절하여도 된다. 그러나 동 은행이 확인은행이 된 때에는 신용장조건을 외관상 충족하는 서류가 제시된 때에는 매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지만, 그 때에는 동 은행이 발행은행과 직접 교섭함으로써 가능한 한 동 은행의 의향에 맞는 해결책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환수권서의 취소·조건변경이 행해지고 상환은행이 최초의 상환수권서에 근거해서 대금상환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상환청구은행이 이미 매입을 실행하였을 때에는 상환청구은행이 상환청구은행으로서 행하는 대

51) URR, 1995, Article 8-c.

52) URR, 1995, Article 8-b. 이 경우 통지경로에 대해서, 자유매입신용장의 경우 통지은행을 통하고, 지정매입신용장의 경우 그 지정된 은행을 통하면 편리할 것이다.

53) 발행은행은 1993년 신용장통일규칙의 제 10 조 (b)항에 따라서, 신용장상에 지정은행이 어디에서 어떻게 또 언제 대금상환을 제공받을 수 있을지를 나타내기 위해 통지은행 앞으로 발송하는 신용장통지서의 왼쪽 하단에 있는 은행간 지시란을 이용할 수 있다. 표기방법으로서 ① “debit our account on your books”, ② “We shall credit your account on our books”, ③ “Claim reimbursement from ……” 등과 같이 기재할 수 있다: ICC, *The New Standard Documentary Credit Forms for the UCP 500*, I.C.C. Publication S.A., 1993, p. 61.

54) *Commentary*, 8.

금상환청구으로서는 신용장조건을 충족하는 한 발행은행에 대해서 지연손해금을 포함해서 대금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⁵⁵⁾ 이와 관련하여 발행은행은 상환청구은행이 대금상환을 어떻게 획득할 지에 대해 새로운 지시를 제공하여야 한다.⁵⁶⁾

(4) 償還確約

URR 525의 제정에 의해, 종전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신용장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상환은행의 사무부담경감이 예상되지만, 다른 하나의 주목할 만한 점은 상환확약(reimbursement undertaking)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규칙에 도입되었고, 그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URR 525는 제2조를 용어의 정의에 할당하면서, 그 가운데 상환확약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와 같은 개념은 지금까지는 언급되지 않았던 것이다. 상환확약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발행은행으로부터 수권 또는 요구에 근거해서 상환은행에 의해 발행되는 것이다(이 수권 또는 요구는 상환수권서에 부기된 것이고, 이와 같은 수권 또는 요구를 포함하고 있는 상환수권서는 취소불능 상환수권서라고 불린다⁵⁷⁾). 둘째, 상환수권서에 지정된 상환청구은행(named claiming bank) 앞으로 발행되는 것이다. 셋째, 상환확약상에 정해져 있는 조건이 충족됨을 조건으로써 상환청구은행의 대금상환청구에 응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넷째, 상환은행에 의한 독립된 취소불능의 확약(separate and independent undertaking)을 구성한다.

요약하자면, 상환확약이란 상환은행이 발행은행의 상환수권서에 의거하여 제시된 지정상환청구은행의 청구에 응하겠다는 상환은행의 별개의 독립된 확약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환은행은 동 은행의 상환확약의 특정조건에 일치하는 청구가 제시되는 경우, 상환청구은행의 청구에 반드시 응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환확약은 신용장확인(confirmation of credit)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① 확약조건에 일치하는 청구가 제시되는 경우, 그 청구에 응할 것이라는 별개의 독립된 확약이다. ② 신용장하 제시되는 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환은행에 의한 청구이행이 이루어진

55) UCP, 1993, Article 19-c · d.

56) URR, 1995, Article 8-b.

57) URR, 1995, Article 9-b.

다. 그것은 상환은행이 청구에 응할 것이라고 하는 지정상환청구은행에 대한 상환은행의 의무이다. ③ 상환확약에는 지정상환청구은행이 명시되기 때문에, 자유매입신용장(freely negotiable credit)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상환확약은 신용장수익자에 대한 상환은행의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수익자는 상환확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환확약의 수익자가 될 수 없다.⁵⁸⁾ 즉 신용장의 확인은 상환청구은행, 즉 URR 525에서 말하는 지정상환청구은행의 입장에 서게 되는 은행이, 신용장의 수익자를 확약의 수익자로 행하는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행하는 것에 대한 확약이다. 이에 반해 상환확약은 상환은행이 행하는 확약이어서 확약의 수익자는 지정상환청구은행이다.

아무튼 이와 같은 상환확약은 외화사정이 양호하지 않은 국가에 소개하는 신용장발행은행이 신용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환은행에 의뢰하여 발행하는 것이지만, 현재 그다지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URR 525에 규정됨으로 해서 앞으로 주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5) 代金償還請求의 基準

발행은행이 지정은행인 상환청구은행에 대해서 상환은행을 지명하게 되면, 상환청구은행의 수권자는 발행은행이기 때문에 상환청구은행은 발행은행의 지시를 충실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 1 차적으로 상환청구은행은 상환은행에 대해 대금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용장상에서 상환청구은행에 부여된 지시하에서, 상환은행에게 대금상환청구를 제시하는 것은, 신용장에 특별지시가 없는 한, 단순히 상환신용장에 근거해서 동 은행이 발행하는 상환어음만을 상환은행에 제시함으로써 가능하다. 상환청구은행으로 하여금 신용장상에서 그 지시에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고, 상환수권서상에도 발행은행이 상환은행에게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은 단순하고 간단하다.

특히 오늘날 각각의 상환청구은행이 전세계에 분산되어 있는 각각의 상환은행과 환거래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 결과 전송 혹은 우편에 의해 상환은행에게 제시되고 있는 대금상환청구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 때문에 URR 525는 해당청구가 인증될 것을 요구

58) ICC, ICC Guide to Bank-to-Bank Reimburse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A practical guide to daily operations, ICC Publication S.A., 1997, p. 47.

하지 않고 있다.

대금상환청구의 방법은 신용장상에 명시된 지시가 특별히 그러한 청구를 금지하지 않는 한 전송에 의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이에는 그 청구가 입증될 필요가 없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가 전송 혹은 우편에 의하든간에 몇몇 상환은행은 그 청구가 입증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상환은행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러한 청구가 의심스럽고 또 입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 은행으로서는 상환청구은행에게 해당청구를 거절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 제시된 청구가 입증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⁵⁹⁾

(6) 代金償還請求의 處理

상환은행은 상환청구은행으로부터 수령한 대금상환청구를 처리하는데 즈음해서, 발행은행으로부터 적절한 상환수권서를 수령하고 있는지, 대금상환청구가 적절하고, 상환수권서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발행은행의 예금잔고는 충분한지, 대금상환이행이 법령상 문제는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령한 대금상환청구를 바로 처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환은행에는 대금상환청구를 처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제상업회의소 작업부회는 상환청구를 처리하는데에 상환은행이 필요로 하는 시간에 대해서 상당한 토론을 행하였다. 불행하게도 은행간 대금상환에 사전통지 또는 차기사전통지가 도입됨으로써 그 처리기간이 복잡스럽게 되고 말았다. 이에 대해 미국의 '은행간 대금상환에 관한 관습 및 절차'의 제 14조에서는 상당한 시간(reasonable time)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URR 525에서는 대금상환청구를 수령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3은행영업일을 초과하지 상당한 시간에 차기사전통지의 일수를 이에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⁶⁰⁾

예를 들어 상환수권서가 발행은행 앞으로 3일전의 차기사전통지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환은행은 상환청구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통지기간에 덧붙여 3일을 기다리게 된다. 이는 발행은행·확인은행에게 서류점검으로부터 서류거절절차를 완료하기까지의 시간으로서 최장 7은행영업일이 부여되어 있

59) URR, 1995, Article 10-a-i.

60) URR, 1995, Article 11-a.

는 것⁶¹⁾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규정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많은 분량의 청구가 제시되거나, 혹은 청구가 제시될 때 다른 요인이 청구에 응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한, 상환은행이 상환청구은행의 청구를 즉시 처리할 수 있다면, 동 은행은 그렇게 하여야 하고 또한 3은행영업일까지 그 처리를 유보하여서는 안된다.⁶²⁾ 이와 아울러 상환은행이 은행영업시간외에 상환청구은행으로부터 청구를 제시받는 경우에는, 동 청구는 다음 은행영업일에 수취된 것으로 간주된다.⁶³⁾

한편, 상환은행이 상환확약을 발행하고 있지 않는 한, 대금상환이 장래의 일자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대금상환청구는 대금상환을 위해서 사전에 결정된 일자(predetermined date)를 언급하고 있어야 한다. 사전에 결정된 일자의 대금상환의 경우에는, 상환청구은행의 청구는 사전에 결정된 일자의 10 은행영업일 전에 제시하여서는 안된다. 만일 청구가 이 시점보다 전에 제시된다면, 상환은행은 동 청구를 무시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환은행이 상환청구은행의 청구를 무시할 것을 선택한 경우에는, 동 은행은 상환청구은행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 만일 사전에 결정된 일자가 청구접수후 3은행영업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환은행은 사전에 결정된 일자까지 또는 청구수취일 다음 3은행영업일에 (있는 경우) 추가기간을 덧붙인 일자의 영업종료시까지, 청구불이행의 통지를 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⁶⁴⁾

또한 상환은행은 상환청구은행 이외의 자에 대해서 지급을 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상환청구은행 이외의 자에게로의 지급은 상환청구은행과 상환은행간의 약정에 의한 경우에만 행해진다.⁶⁵⁾

상환은행은 신용장거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 은행은 발행은행을 위해서 지급편의를 제공함에 있어, 발행은행 이외의 신용장 모든 관계당사자로부터 독립하여 행동한다. 즉 상환은행은 발행은행의 지시에 근거해서 행동하는데 지나지 않기 때문에, 상환은행은 자신이 발행한 상환확약조건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상환청구은행의 대금상환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

61) UCP, 1993, Article 13-b.

62) ICC, *ICC Guide to Bank-to-Bank Reimburse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A practical guide to daily operations*, ICC Publication S.A., 1997, p. 42.

63) URR, 1995, Article 11-a-i.

64) URR, 1995, Article 11-c- i, ii, iii.

65) URR, 1995, Article 11-c-d.

하지 않는다.⁶⁶⁾

상환은행이 상환청구은행의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환은행은 대금상환을 행하지 않는 이유를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⁶⁷⁾ 그러나 그러한 취지를 telecommunication에 의해, 혹은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신속한 방법에 의해서 지체없이, 다만 청구수취일에 이어 3은행영업일⁶⁸⁾의 마감시간까지 그러한 취지를 상환청구은행과 발행은행 앞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상환확약의 경우에는 상환은행은 그러한 통지에 이유를 붙여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다.⁶⁹⁾

(7) 償還授權書의 二重發行

때때로 신용장에 근거해서 서류가 제시된 때에, 발행은행이 상환은행에 새로운 상환수권서를 송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그 결과로서 종종 상환은행에 의한 이중의 대금상환이 행해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행은행이 이와 같은 중복된 지시를 발행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만일 이중의 대금상환이 행해진다면 발행은행은 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⁷⁰⁾

4. 雜 則

(1) 償還銀行의 免責

URR 525는 ① 외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⁷¹⁾, ② 메시지전달에 대한 면책,⁷²⁾ ③ 불가항력에 따른 상환은행의 업무중단⁷³⁾ 등에 관해서는 UCP 500과 동일한 사고에 의해 규정하고 있다.

(2) 費用

상환은행의 경비와 관련하여, 이전부터 몇몇 상환청구은행들은 수익자에게

66) URR, 1995, Article 4.

67) *Commentary*, 4.

68) URR 525의 제 11 조 (a) 항 (i) 호에 언급된 추가기간이 있다면 그것을 가산하여.

69) URR, 1995, Article 11-a-ii.

70) URR, 1995, Article 12.

71) URR, 1995, Article 13.

72) URR, 1995, Article 14.

73) URR, 1995, Article 15.

대금지급을 행할 때 미리 상환은행의 경비를 공제하거나, 상환은행이 상환청구은행의 상환청구에 응할 때 그러한 경비를 공제하는 등 상환은행의 경비부담에 관해 다소 복잡한 문제가 발생되어 왔다.⁷⁴⁾

이와 관련하여, UCP 500 및 URR 525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상환은행의 경비는 발행은행이 부담하여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사자들이 별도 합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⁷⁵⁾ 만일 동 경비를 다른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고자 한 경우에는, 발행은행으로서 이를 신용장 및 상환수권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⁷⁶⁾ 이 경우 동 경비는 신용장에 따라 환어음을 발행할 때 상환은행이 상환청구은행에 대해 대금상환을 실행할 때 공제할 수 있다.⁷⁷⁾ 신용장에 따라 환어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은행의 경비는 발행은행의 의무로 남는다.⁷⁸⁾

상기조항의 취지는, 신용장에 따른 상환은행의 경비는 본원적으로 발행은행이 부담하여야 하지만, 신용장이나 상환수권서에 동 경비를 수익자와 같은 제 3의 당사자 부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상환은행은 상환청구은행이 신용장에 따라 환어음을 제시해 올 때 동 경비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신용장을 발행할 때, 동 경비를 감안하지 아니하여 수익자의 환어음이 충분하게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환은행은 수익자의 환어음으로 상환경비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발행은행이 동 경비를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상환은행으로서는 상환청구은행의 상환청구에 대해 지급을 행할 때 상환수권에 포함된 경비에 관한 발행은행의 지시를 준수할 의무가 있지만⁷⁹⁾, 만일 발행은행이 상환은행에게 경비에 관한 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환은행은 모든 경비를 발행은행에게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⁸⁰⁾

74) ICC, *Opinions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1984-1986, pp. 65~66; ICC, *Opinions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1987-1988, pp. 19~21; ICC, *Opinions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1989~1991, pp. 22~24.

75) 지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상환은행의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담시킨다는 명시조건이 있는 신용장이 발행되는 경우, 신용장통일규칙 제 19조 (d) 항은 그러한 명시계약조건을 무력화시키지 않는다: ICC, *Opinions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1987~1988, pp. 17~19; Howard N. Bennett, *op. cit.*, p. 125.

76) UCP, 1993, Article 19-e, URR, 1995, Article 16-a.

77) UCP, 1993, Article 19-e, URR, 1995, Article 16-c.

78) UCP, 1993, Article 19-e.

79) URR, 1995, Article 16-b.

(3) 利子請求 및 價値損失

이자손실과 관련하여, 신용장상의 지시에 따라 지급이행을 행한 상환청구는 행이 상환은행에 대해서 대금상환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초의 상환 청구시에, 또는 경우에 따라서 신용장상에 별도로 명시되었거나, 또는 상호 합의된 바 대로 상환은행으로부터 대금상환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발행은행은 상환청구은행에 대하여 모든 이자손실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⁸⁰⁾

예를 들어 발행은행이 상환은행에게 적기에 상환에 관한 정당한 지시나 수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은행은 상환은행에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발행은행에 대해서 상환금 원금지급을, 또 필요에 따라서는 지연 이자지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만일 상환은행에 대한 상환청구가 수익자가 발행한 동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이러한 어음의 제시, 지급 및 지급거절 등의 행위는 지급지가 속한 국가의 어음법에 따르게 된다. 일람지급어음의 경우 만기일은 어느 국가에 있어서도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된 일자, 환언하면 지급청구를 받은 일자이다. 우편에 의한 경우는 어음의 송부받은 일자로 해석되기 때문에, 상환은행은 우편물을 수령한 일자에 당해어음의 상환을 실행하여야 한다.

한편, 환차손의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상환은행이 상환확약을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는 상환청구은행과 발행은행간의 문제이다. 즉 대금상환청구를 처리하는 상환은행으로서는 대금상환청구의 시점과 대금상환일간에 환변동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많은 대금상환청구가 우편으로 행해지든지, 또는 차기사전통지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어느 경우에도, 대금상환청구가 송부되는 시점과 상환은행에 의해서 대금상환이 행해지는 시점간 지연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상환은행이 상환확약을 발행한 경우에는, 동 은행은 상환확약은행으로서 독자적인 취소불능의 채무를 상환청구은행에 대해서 부담하기 때문에, 대

80) URR, 1995, Article 16-e.

81) UCP, 1993, Article 19-d.

금상환청구가 적절하게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정해진 대금상환 처리 일수내 행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환확약은행은 상환청구은행에 대해서 지연 손해금 및 환차손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⁸²⁾

V. 結 論

상환은행이 개입하는 은행간 대금상환에 관하여 당사자간 의무와 책임을 규율하는 국제상거래규칙이나 세부적 통일규칙이 마련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거래당사자간 관행이 형성되어 있을 뿐, 대금상환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시 당사자간에 일관된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힐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상업회의소는 URR 525를 제정하였다.

URR 525의 주된 내용은, 대체로 상환은행의 법적 성격으로서 상환은행은 단순히 발행은행의 지급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고, 다른 사항은 모두 발행은행과 상환청구은행간에서 해결하여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에 입각하고 있다. 때문에 URR 525하에서는 특히 발행은행이 상환은행 및 상환청구은행 앞으로 행하는 상환수권서 및 은행간 지시 및 그 조건변경과 관련된 사무절차가 엄격히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실무상 주의가 요망된다. 또한 스위프트 관련 메시지 · 포맷을 사용하는 경우, 가맹국간에서는 URR 525에 준거한다는 특약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포맷을 사용하여야 하고, URR 525에 의하지 않는 신용장을 발행하려는 발행은행이나 통지은행은 이러한 사실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화환신용장거래에서 신용장 준거문언이 UCP 500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자동적으로 URR 525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은행간 대금상환이 필요한 신용장의 경우에는 URR 525가 적용된다는 문언을 신용장발행시에 명시하여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82) URR, 1995, Article 17. 상환확약은행이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발행은행이 일정한 경우에 상환청구은행에게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UCP, 1993, Article 19-d)을 고려하면 당연하다. 지연손해금의 이자율은 상환은행의 소재지에 있어 이행기의 은행간 이자율이 그 기준이 된다.

參考文獻

- 姜元辰, “貨換信用狀去來에서 銀行의 免責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中央大學 校 大學院, 1990.
- 姜元辰·李千守, “銀行間 代金償還과 관련된 發行銀行의 義務 및 責任에 대한 몇 가지 問題點”, 「國際商學」, 제 13 권 제 3 호, 韓國國際商學會, 1998.
- 韓柱燮, “信用狀去來에서의 銀行間 償還에 관한 研究”, 「仲裁」, 제 289 호, 大韓商 事仲裁院, 1998.
- 東京銀行, 貿易と信用狀, 實業之日本社, 1996.
- 小峯 登, 1974年信用狀統一規則(上卷), 外國爲替貿易研究會, 1974.
- 伊澤孝平, 商業信用狀論, 有斐閣, 1986.
- 朝岡良平, 實務家のための信用狀統一規則, 金融財政事情研究會, 1985.
- Bennett, Howard N., “Bank-to-bank reimburse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 the Uniform Rules”,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1998. 2.
- ICC,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under UCP 500*, ICC Publishing S.A., 1995.
- _____,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Problems, queries, answers*, ICC Publishing S.A., 1989.
- _____, Document No. 470/~37/4, May 27, 1991.
- _____, *Documentary credits UCP 500 & 400 Compared*, ICC Publishing 1993.
- _____, Documents 470/727, 1995.
- _____, *ICC Guide to Documentary credit Operations for the UCP 500*, ICC Publishing S.A., 1994.
- _____, *ICC Guide to Bank-to-Bank Reimburse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A practical guide to daily operations*, ICC Publication S.A., 1997.
- _____, *More Case Studies on Cocumentaty Credits*, ICC Publishing S.A., 1991.
- _____, *Opinions(1980-1981)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ICC Publishing S.A., 1982.
- _____, *Opinions(1984-1986)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ICC Publishing S.A., 1987.
- _____, *Opinions(1987-1988)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ICC Publishing

S.A., 1989.

____, UCP 1974/1983, Revisions Compared and Explained, ICC Publishing S.A., 1984.

____,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____, *Uniform Rules for Bank-to-Bank Reimburse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1995.

____, *Uniform Rules for Bank-to-Bank Reimburse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 A Commentary*, 1995.

ABSTRACT

**Uniform Rules for Bank-to-Bank Reimburse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 Transactions**

Lee, Cheon soo

When an issuing bank issues a documentary credit, it must decide if the reimbursement will be a direct or simple or a bank-to-bank reimbursement. This decision is based on the bank that is nominated to pay, incur a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accept drafts or negotiate.

If an issuing bank decided bank-to-bank reimbursement, it must include the information in the credit instructing the nominated bank on how to obtain reimbursement. This instruction includes the name of the reimbursing bank, an indication that the reimbursement is subject to the Uniform Rules for Bank-to-Bank Reimburse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URR'), ICC Publication 525 and any additional information that affects the nominated bank's ability to receive reimbursement.

Until recently, reimbursements were the subject of outline regulation by Article 19 of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 and national law. Now, however,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has drafted URR, designed to emulate the harmonization of rules governing documentary credits achieved by the UCP. The URR are complementary to the UCP, which they are not intended to override or change. They became effective on July 1, 199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mote understanding on the Uniform Rules for Bank-to-Bank Reimburse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In this paper, I studied the following subjects: (1) Bank-to-Bank Reimburse-

ments transaction under Documentary Credits, (2) Meaning of the URR's promulgation, (3) Analysis on the URR's Article. ① General provisions and definitions, ② Liabilities and responsibilities, ③ Form and notification of authorisations, amendments and claims, ④ Miscellaneous provisions.

Key Words : Documentary Credit, UCC, UCP, URR, Reimbursement.